



문서번호 2015-1101

수 신 보건복지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요구

날 짜 2015. 11. 16. (총 6 쪽)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요구

.....

1. 안녕하세요?

2.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분야를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는 것이며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폐기를 요구합니다.

3.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니다. 둘째,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셋째,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 장소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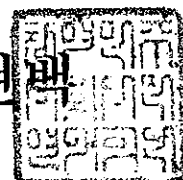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첫째,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을 영리화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회가 하루빨리 위 법안들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

■ 첨부자료

1.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1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첨부자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 관련 법안

○ 2014년 10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문제점

(1)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

제7조(보험회사등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5조에 따라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단, 숙박 일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보험업법」 제2조제8호의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2009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의 삼성병원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또한 민간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메디텔' 설립권한을 주게 되며 이는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공동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편법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는 민간보험회사가 병원 또는 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형태임.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병원이용이 어려움. 이처럼 미국식 시스템 도입은 민간보험사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건강보험제도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임

(2)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가능하게 함

제9조(외국인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 ①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해외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또는 진단 지원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
- ② 해외 원격의료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 전 사전에 해외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진단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어 있지 않음.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커 안전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医료를 해외환자 대상으로 했을 시, 언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국제의료분쟁 등 문제 발생 여지는 큼
- 또한 법안에는 해외환자로 한정하여 원격医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는 해외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큼

(3) 상업적인 의료광고 허용

제8조(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①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의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 현재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 10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법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된 광고를 지정장소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구분할 수 없음. 또한 민간보험업자들을 포함한 유치업자들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업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행해 질 수 있음

(4)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사 및 병원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법안

제16조(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정부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우대
4.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우선적 보증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안에 국제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관련 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

2. 문제점

(1)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제2조 제1호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

○ 법안 제5조~7조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임

(3) 의료영리화, 산업화 추진 가속화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적극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1)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약화, 의료의 영리화·산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는 의료를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간주하여 영리화·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